

11. 주주의 유한책임

(1) 주주의 의의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주권의 귀속주체이다. 주식의 인수 또는 양수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자연인, 법인 모두 주주가 될 수 있다.

(2)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주주는 회사채권자와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회사에 대하여(간접책임)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유한책임)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331). 그런데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이것은 회사성립 또는 신주발행이 효력발생에 전부 이행되어야 하므로,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출자의무는 주주의 의무가 아니라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의무에 해당된다.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334). 이러한 주주의 간접·유한책임에 대한 예외가 법인격부인론이다.

(3) 주주의 권리

1) 자익권과 공익권

① 자익권 - 회사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익배당청구권(462), 신주인수권(418), 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 주식매수청구권(374조의 2, 522조의 3),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등이 있다.

② 공익권 - 자기의 이익이나 회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로, 의결권(368, 369), 설립무효의 소권(328),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권(380),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권(376), 신주발행유지청구권(424)과 해산판결청구권(520-1), 총회소집청구권(366), 이사·감사해임청구권(385-2), 회계장부열람청구권(466), 대표소송권(403),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402)이 있다.

2)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① 단독주주권 - 자익권, 의결권, 설립무효의 소권,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② 소수주주권 - 해산판결청구권 - 10% 이상의 소수주주권

총회소집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3% 이상

대표소송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1% 이상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의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반면에 행사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다(542조의 6).